

서울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재나202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츠로

담당변호사 이상경

피고(재심원고), 항소인

B

변론 종결 2021. 3. 25.

판결 선고 2021. 4. 22.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7가합539955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3. 8. 선고 2018나2034078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유한회사 G 사이에 2015. 2. 12. 체결된정산합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11,957,1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유한회사 G 사이에 2015. 2. 12. 체결된 정산합의 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 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4. 25.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 사건 제1심판결).

나.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 7. 24.자 2019다227992 판결).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 소 제기 당시 유한회사 G에 대하여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는데도, 10억 5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허위주장을 하면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소송사기에 해당하고 현재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앞으로 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란 위조나 변조된 문서 등이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274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채권액에 대한 허위주장에 근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재심대상판결에서 채택된 증거 중 어떤 것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원고를 소송사기 혐의 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조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석조, 판사 김길량, 판사 김용민